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 전현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625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현회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0. 17.

(3) 회 부 일 : 2025. 10.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도서관은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과 함께 도서실로 시작하여 2020년 별관 준공을 계기로 규모를 확대해 오면서, 헌법재판 연구 지원,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국민과 학계, 법률 전문가에게 중요한 헌법·법률 자료 등을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공법도서관으로 외형적·질적 성장을 지속해 왔음.

그런데,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내부 자료 제공 부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헌법재판의 연구지원과 국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도서관을 설치하고, 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19조의5 신설 및 제16조제4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6조(재판관회의) ① ~ ③ (생략)	제16조(재판관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사무처장, 사무차장, <u>헌법재판연구원장</u> ,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3. ----- <u>헌법재판연구원장</u> , <u>헌법재판소도서관장</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신설>	제19조의5(<u>헌법재판소도서관</u>) ① <u>헌법재판 연구지원과 국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u>

현행	개정안
	②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그 밖에 도서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나. 헌법재판소도서관 현황

헌법재판소도서관은 1988년에 개관하여 헌법재판소 별관 청사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바,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 중임.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7조(사무처 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기획조정실·심판지원실 및 행정관리국을 둔다.
② <u>사무차장 밑에</u> 공보관 및 <u>도서총괄심의관</u> 을 둔다.
제12조(도서총괄심의관) ① 도서총괄심의관은 헌법연구관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도서총괄심의관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도서정보과장·자료편찬과장 및 자료조사과장을 두고, 도서정보과장·자료편찬과장 및 자료조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도서총괄심의관은 제4항·제5항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④ 도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총괄심의관을 보좌한다.

1.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기획
 2. 헌법재판소 도서 및 관례심의위원회 운영
 3. 자료의 수집·등록·정리·관리·보존
 4. 자료의 열람·대출
 5. 도서관 간의 교류·협력
 6. 전자도서관 운영
 7. 그 밖에 관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자료편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총괄심의관을 보좌한다.
1. 국·영문 판례의 편찬 및 발간
 2.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찬 및 발간
 3.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등 헌법재판 관련 자료의 편찬 및 발간
 4. 국내외 자료 교류 및 협력
 5. 헌법재판소 발간물의 관리·배포 및 보급
 6. 헌법논총의 공모 및 발간
- ⑥ 자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총괄심의관을 보좌한다.
1. 해외자료 조사·번역
 2. 국내자료 조사
 3. 조사·번역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4. 헌법재판자료의 선제적 지원
 5.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업무
 6. 헌법재판소 상설전시관 운영

[헌법재판소도서관 조직]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헌법재판의 연구지원과 국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도서관을 설치하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으로,

현재 헌법재판소도서관이 헌법재판소 내부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기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그 지위와 역할에 한계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도서관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법원의 경우 「법원조직법」에서 법원도서관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국회의 경우 별도의 법률인 「국회도서관법」을 마련하여 국회도서관의 조직,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법원조직법」 상 법원도서관 관련 규정]

제22조(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법령·문헌·사료 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제81조(조직) ① 법원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국회도서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도서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2.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회답·제공
3. 국회전자도서관의 구축·운영
4. 삭제 <2025. 11. 11.>

5. 입법활동에 관한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6. 국내외 입법지원기관, 다른 도서관 등과의 교류·협력

7. 그 밖에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

② 도서관은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교육·연구기관과 공중에 대하여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관장) ① 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② 관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 관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도서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도서관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고금관리·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사무·공직자재산등록사무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고금 관리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 제13조 (생 략)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개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재 헌법재판소도서관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1988년 개관 이래 38년 가량 이미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바, 관련 사항을 반드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도서관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무처 하부조직으로서 헌법재판소 업무 지원과 더불어 공법 전문도서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규칙에 근거를 두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¹⁾이므로 헌법재판을 지원하는 핵심 조직 역시 법률에 의해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며,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법률에 설치·운영의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의견을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둘째,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기로 하는 경우 그 설치 기능과 역할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의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개정안은 안 제19조의5(헌법재판소도서관)제1항에서 “헌법재판연구지원과 국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도서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²⁾에 따라 설치된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 등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법원도서관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법령·문헌·사료 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도서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상 규정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은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공무원

2)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①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② ~ ⑥ (생략)

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 내 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과의 관계,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법원도서관의 조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개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³⁾에 따라 설치된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정원을 두고, 원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81조⁴⁾에서는 법원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① (생략)

- ②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 ③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④ 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연구관 및 연구원은 헌법연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⑤ 연구관 및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보하거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1. 헌법연구관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⑥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4) 「법원조직법」 제81조(조직) ① 법원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 ② 관장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③ 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현행법상 규정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8